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2023. 12. 19.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은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인 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을

삭제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민큐레이터 사업이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는

여전히 해당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